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규백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민간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신기술의 실험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이용 허가 시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편을 완화하고,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및 국방정보화 평가와 관련된 조문을 현행업무 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국방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기능 구체화 및 확대(안 제6조, 제9조제1항)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명시하고, 국방정보화 업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되,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의 안건을 협의회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협

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을 명확히 함.

나.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 제정 근거 마련(안 제6조, 제9조제2항, 제10조)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참조모형” 관련 문구 삭제(안 제11조제3항)

이 영에서는 제11조제3항 외에 “참조모형”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참조모형”은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자구를 간소화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참조모형에 관한 정보를 관리·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문구를 삭제함.

라. 신기술 실험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이용 허가 시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1항)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인 필수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삭제하고,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게 함.

마.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비 지급(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에서 복무하는 전문인력에게 역량강화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전문성 제

고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바. 국방정보화 평가 관련 세부사항을 훈령에 위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국방정보화 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가변적이고 복잡한 사항으로 훈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어, 국방정보화 평가의 종류 및 정의 등 핵심내용을 제외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7년 예산편성 소요제기 중

다. 합 의 : 기획예산처와 합의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협의회”를 “국방부장관 및 협의회”로, “인정한”을 “정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조정하기”를 “검토·조정 또는 심의·의결하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무협의회 의장은 필요 시 안전을 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 및 운영”을 “구성”으로 한다.

4. 국방정보화 사업 및 연구과제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중 “협회의의 운영”을 “협의회 및 실무협회의의 운영”으로, “협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을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있도록 참조모형, 각 기관 또는 부대의”를 “있도록”으

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제1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역량강화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역량강화비의 지급기준, 지급액 등 역량강화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모든 기관”을 “기관”으로, “매년 실시하는”을 “실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 방 정보화 책임 관 협 의 회 (이 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에 관한 사항을 <u>협의한다</u> .	제6조(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 ----- ----- ----- ----- <u>심의 · 의결한다</u>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u>협의회의</u> 의장이 국 방정보화정책에 필요하다고 <u>인정한</u> 사항	5. ----- <u>국방부장관 및 협의회</u> ----- <u>정하는</u> --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 로 <u>검토 · 조정하기</u> 위하여 국방 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u><단서 신설></u>	제9조(실무협의회) ① ----- ----- -- <u>검토 · 조정 또는 심의 · 의</u> <u>결하기</u> ----- ----- <u>다만, 실무협의회 의장은 필요</u> <u>시 안건을 협의회에 상정할 수</u> <u>있다</u>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 <u>항</u> <u><신 설></u>	4. <u>국방정보화 사업 및 연구과</u> <u>제에 대한 사항</u>
	5. <u>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u> <u>는 사항</u>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u>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u> 사항은	② ----- <u>구성</u> -----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①·② (생략)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전자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각 기관 또는 부대에서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조모형, 각 기관 또는 부대의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

----- 협의회 및 실무협
의회의 운영 -- 국방부장관---
-----.

제11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있도
록 -----

-----.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① -----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삭 제

3. · 4.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한 후 시설 및 장비의 이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① ~ ③ (생 략)

<신 설>

<삭 제>

3. · 4.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제3항-----

--.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역량강화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국방정보화 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화정책평가: 국방정보화를 추진하는 모든 기관 및 부대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평가

2. (생략)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정보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지표, 점검목록 등 평가 기준

2. 평가 대상 기관 및 사업

3.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등 평가 방법

4. 평가 추진일정

③·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역량강화비의 지급기준, 지급액 등 역량강화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국방정보화 평가) ① -----
-----.

1. -----
----- 기관 -----

----- 실시하는 -----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국방정보화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913